

의결권행사지침

비케이피엘자산운용(주)

의결권행사지침

제정일자 2022. 4.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9, 90, 91조,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32조에 따라 회사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장 의결권 행사기준

제3조 (의결권 행사여부 등)

-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여부, 찬반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집합투자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의결권 행사기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의 내재가치 상승
4.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5조 (의결권 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에 의한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 주식

제6조 (의결권 교차행사 등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 의무 또는 의결권 행사 금지의무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의결권 행사방법

제7조 (의결권 행사주체)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참석장 제공)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사정족수 확보의 목적으로 참석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결권의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의결권 행사절차

제11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의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결정)

-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가 결정한다.
- ② 운용담당자는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이사, 운용인력, 종목분석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의결권행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의장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담당자로 한다.
- ③ 전항의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의장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담당자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의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회사는 필요한 경우 운용담당부서,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공시 등

제14조 (공시)

- ①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한다.
- ②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의 유지)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본시장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계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